# 기업공시규정 개정(안)

### 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했

혅

- 1. ~ 3. (생략)
- 4. "공시통제조직"이라 함은 공시정보의 생성, 수집, 검토, 공시서류의 작성, 승인 등 공 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<u>대표이사,</u> 공시책임자, 공시총괄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공시주관부서를 의미한다.
- 5. "공시책임자"라 함은 <u>대표이사의</u>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하며 공시책임자로 한국거래소(이하 "거 래소"라 한다)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.
- 6. ~ 11. (생략)
- 12. "자율공시"라 함은 회사가 <u>제9항의</u> 수시 공시사항 이외의 회사의 경영·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 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에 공시 하는 것을 말한다.

13. ~ 14. (생략)

<신 설>

#### 제4조 (사장)

<u>① 사장은</u> 공시통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<u>관장한다.</u>

- ② 사장은 공시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공시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

#### 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정

개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"공시통제조직"이라 함은 공시정보의 생성, 수집, 검토, 공시서류의 작성,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<u>사장</u>, 공시책임자, 공시총괄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공시주관부서를 의미한다.
- 5. "공시책임자"라 함은 <u>사장의</u>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공시책임자로 한국거래소(이하 "거래소" 라 한다)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.
  - 6. ~ 11. (현행과 같음)
  - 12. "자율공시"라 함은 회사가 <u>제9호의</u> 수시 공시사항 이외의 회사의 경영·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 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에 공시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3. ~ 14. (현행과 같음)
  - 15. "금융채권자협의회"라 함은 「기업구조 조정 촉진법」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말한다.

#### 제4조 (사장)

사장은 공시통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<u>관장</u>하며,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| 현 행  | 개 정   |
|--|---|
| <ul> <li>2. 공시통제에 대한 권한·책임·보고체계의 수 료</li> <li>3. 공시통제 관련 제 규정의 승인</li> <li>4.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</li> </ul>         |   |
| 제5조 (공시책임자) ① (생 략)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7. (생 략) <신 설> ③ (생 략) <신 설〉 | 제5조 (공시책임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  |
| 제6조 (공시총괄부서)   | 제6조 (공시총괄부서)  |
| ① <u>대표이사는</u>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 | ① 사장은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중 2인은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회사 공시담당자(이하 "공시담당자"라 한다)로 지명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 ② 공시총괄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 ~ 5. (현행과 같음) 6. 기타 사장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총괄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 |

제7조 (공시주관부서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공시주관부서의 장은 공시주관부서가 제

제7조 (공시주관부서)

① ~ ② (생 략)

<u> <신 설></u>

#### 개 혅 햀 정

제9조 (수시공시)

① ~ ③ (생 략)

④ 공시총괄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

「공정거래법」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.

⑤ 공시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검토내용 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 에 대해 승인하여야 하며 수시공시와 관련하 여 중요한 사항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 (조회공시)

① (생략)

② 공시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공시주관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당해 공시주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공시총괄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(이하 '미확정 공시'라 한다)한 경우에 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 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 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 를 실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 시를 실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사후 점검)

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공시주관부서의 장 ① 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공시주관부서의

출한 공시정보 및 서류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#### 제9조 (수시공시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④ 공시책임자는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 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하며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 한 사항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 (조회공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공시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공시주관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당해 공시주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시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 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③ 공시총괄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(이하 '미확정 공시'라 한다)한 경우에 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 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 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공 시를 실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개월 이내 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4조 (사후 점검)

## 현 행 개

과 공시총괄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 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<u>하며 공시</u> 총괄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 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 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〈신 설〉 장과 공시총괄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<u>한다.</u>

정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관계기관의 점 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공 시총괄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(준용)

제8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3조 발행공시에, 제9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 정은 제10조 공정공시, 제11조 조회공시, 제12조 자율공시, 제13조 주요사항보고 공 시에 이를 준용한다.

### 제16조 (정보의 수집 · 유지 · 관리 등)

① (생략)

② 사장은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·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7조 (공시위험의 관리)

① 사장과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<u>공시주관자의</u> 변경 : <u>공시주관자의</u>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,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공시위험

10. (생략)

② ~ ③ (생 략)

#### 제21조 (시장풍문 등)

#### 제15조 (준용)

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3 조 발행공시에,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은 제10조 공정공시, 제11조 조회 공시, 제12조 자율공시, 제13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이를 준용한다.

### 제16조 (정보의 수집 · 유지 · 관리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<u>공시책임자는</u>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·직원간의 원활한 정 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 립 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제17조 (공시위험의 관리)

① 사장과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<u>공시담당자의</u> 변경 : <u>공시담당자의</u> 변경 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,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공시위험

10. (생략)

② ~ ③ (생 략)

#### 제21조 (시장풍문 등)

#### 개 혅 했 정

① ~ ② (생 략)

<신 설>

## 제22조 (기업설명회)

① 투자설명회. 투자관련자 간담회 등 기업 설명회(이하 "기업설명회"라 한다)를 개최하 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시주관부 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, 장소, 대상 등을 공시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,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에 료와 예상문답에 대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사 대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 야 한다.

② (생략)

#### 제26조 (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)

-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 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 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~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#### 제28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)

-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 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 다.
- 1. 법률에 의거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 는 사항의 수립, 변경, 추진, 공시,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직원
- 2. (생략)
- ② (생략)
-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|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
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공시총괄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 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#### 제22조 (기업설명회)

① 투자설명회, 투자관련자 간담회 등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 하는 공시주관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의 개 최 일시, 장소, 대상 등을 공시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,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#### 제26조 (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)

- ① 사장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~ 2. (현행과 같음)
  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### 제28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)

-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 야 하다.
  - 1.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, 변경, 추진, 공 시,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직원
  - 2. (생 략)
  - ② (현행과 같음)

| 현 행  | 개 정  |
|--|--|
| 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·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, 그 금액, 반환청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한다. 다만,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〈신 설〉  〈신 설〉  〈신 설〉 | 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·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① 공시총괄부서장은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"증선위"라 한다)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. 단기매매차익 금액(임원별·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) 3.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.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. 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이 호에서 같다)는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|
| 별표 1 기업공시사항( <u>별첨)</u>  |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<br>별표1 기업공시사항( <u>별첨)</u>   |
| 부  | 칙  |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〈별첨〉

(현 행)

별표 1

# 기업공시사항

## 1. 정기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. 사업보고서 :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       | -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|
| 2. 반기보고서 :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| -반기 경과 후 45일 내   |
| 3. 분기보고서 :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    | -분기 경과 후 45일 내   |
| 영업실적 등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## 2. 주요경영사항(수시공시)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「영업 및 생산활동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 가. 매출액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(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·반납 등 포함) 나. 매출액의 5%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* 다. 매출액의 5% 이상의 단일판매계약·공급계약 체결·해지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라. 매출액의 5%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또는 파기 등 결정 시마. 매출액의 5%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 중단, 폐업 또는 재개된 때 2. 「재무구조 변경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가. 중권에 관한 사항 (1)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시 (2) 주식의 소각 결정 시 (3) 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·해지포함)결정 시 (4) 주식분할 또는 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) 결정 시 (5)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시 (6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, 증권예탁증권의 발행결정 시 * (7) 해외증권시장에 관한 사항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가) 해외증권시장에 관한 사항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가) 해외증권시장에 작한 사항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가) 해외증권시장에 작한 사항 취임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·수시로 신고·공시한 때 (다)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결정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시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 즉시      |

| (8)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시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<b>투자활동</b> 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<br>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<u>취득처분</u> (특정금전신탁 등 포   | (8)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시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<u>취득처분</u> (특정급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회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다. 채권·체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체무보증(입찰·계약·하자·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남세보증은 제의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법인(피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사채의 원리급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 21조 제 2 항의 급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급전의 가지급, 급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시 (종업원, 우리사주조함에 대한 대여는 제외) 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재해(천재 · 지변 · 전시 · 사변 · 화재 등) 발생 시          | (8)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시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<u>취두처분</u> (특정급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범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<u>출자지분 처분 결정 시</u>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회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다.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해무인수 또는 면제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채무보증(입찰·계약·하자·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탑세보증은 제외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법인(피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당한하는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 21조 제 2 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급전의 가지급, 급전대어 또는 증권의 대어에 관한 결정 시 (중업원,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어는 제외) 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재해(천재 • 지변 • 전시 • 사변 • 화재  | 고기 시민 기원  | 고시키취 | 총괄부서 |
|--|--|---|---|------|------|
| <ul> <li>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</li> <li>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<br/>신설 결정 시</li> <li>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처분(특정금전신탁 등 포</li> </ul>   |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<u>취득처분</u> (특정급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<u>출자지분 처분 결정 시</u>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회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다.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채무보증(입찰·제약·하자·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남세보증은 제외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법인(피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제 21조 제 2 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시 (중업원,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)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재해(천재·지변·전시·사변·화재등) 발생 시 | (9) 이음의 위·번포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치분(특정급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범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중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시분 처분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범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중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시분 제본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회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다. 체권·채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체무보증(입찬·계약·하자· 사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남세보증은 제외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체무보증 법인(괴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 21조 제 2 항의 급용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미지급 시 (7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급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는 제외) 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생합하는 인지원 등의 횡량·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* (4) 파생상품의 거래(위험회의 목적의 거래는 제외)로 인하여 자기 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| 전달기한 |
|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희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다.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채무보증(입찰·계약·하자·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법인(피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제 21조 제 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미지급 시 (7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시 (종업원,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) 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재해(천재・지변・전시・사변・화재등) 발생 시 | 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(3) <u>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임·직원 등의</u> 횡령·배임혐의가<br>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<u>때</u> *(4) 파생상품의 거래(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는 제외)로 인하여 자기   | 음 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원 등(퇴직자 포함) 의 가장납입 혐의 확인 시 (6)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% 이상인 사실 확인 시   |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<u>취득처분</u> (특정급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<u>출자지분 처분 결정 시</u>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부도, 회생절차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다.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태보제공 또는 체무보증(입찰·계약·하자·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) 결정 시 *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체무보증 법인(피보증 법인)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이 확인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시 (6)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 21조 제 2 항의 급용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급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급액에 상당하는 원리금 미지급 시 (7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시 (중업원,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는 제외) 라. 손익에 관한 사항 (1)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재해(천재·지변·전시·사변·화재등) 발생 시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행임된 때 대한 대여는 제외)라고 사실이 확인된 때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발급·과태료·추정금 또는 과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병급 과 과접의 등의 형령·배임혐의가확인된 때 및 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·직원 등의 형령·배임혐의가확인된 때 및 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(4) 파생상품의 거래(위험회의 목적의 거래는 제외)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·전 등(퇴직자 포함)의 가장남입 혐의 확인 시 |      |      |

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      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3 1 11 10   |             | 전달기한       |
| 마. 결산에 관한 사항  (1)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. 이 경우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(가) 감사의견 부적정, 의견거절,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(나)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% 이상 잠식(다)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 (2)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 (3) 매출액,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%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 시.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· 공고하기 이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매출액·영업손익·당기순손익 항목 중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신고하는 경우 다른 항목 및 자산·부채·자본총계 현황을 함께신고  (4) 주식배당 결정 신  (5) 현금·현물배당(분기배당, 중간배당 포함) 결정,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(기준일) 결정 시  (6)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사항  (가) 중선위로부터 검찰고발(통보)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그 결과가 확인 시  (나) 검찰에 기소되거나 그 결과 확인 시  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<br>즉시 |
| <ul> <li>3.「기업경영활동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가.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</li> <li>* (1) 최대주주 변경 확인 시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신고]</li> <li>* (2) 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 시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신고]</li> <li>(3)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자회사 또는 주요종속회사 편입 또는 탈퇴 시.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요종속회사를 편입하여 지배회사가 되는 경우 그 주요종속회사 포함</li> <li>(4)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결정 시</li> <li>(5) 영업양도양수·임대, 경영위임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(물적 분할합병 포함) 등에 관한 결정 시</li> <li>(6)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시</li> <li>나. 존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(1) 부도, 은행거래정지 또는 금지</li> <li>(2)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관련사항으로 회생절차 개시・종결 폐지 및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</li> <li>(3) 해산사유 발생</li> <li>(4) 거래은행 또는 <u>채권금융기관이</u>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</li> </ul>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
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를 개시 · 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 * (5)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 시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신고]  (6)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·중단 또는 해체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 다.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·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·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(1)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,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 (2)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% 이상인 소송 등  (3) 임원의 선임·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하가 신청, 임원의 선임·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·취소의 소,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 (4)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에 따른 소송라.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 시  (신 설〉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 즉시      |

- 주) 1. 매출액, 자기자본, 자산총액, 영업손익, 당기순손익 등은 **최근사업연도말** 기준
  - 2. \*표시는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기한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가능

### 3. 공정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  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<ol> <li>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</li> <li>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</li> <li>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</li> <li>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</li> </ol> | 정보<br>제공 전 | 정보제공<br>결정<br>즉시 |

## 4. 조회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|--------------|
| 1. 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요구 | 공시요구         |
| 2. 중요한 정보(수시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정보)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 | 시하   | 즉시           |

## 5. 자율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기술도입·이전·제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2.72        |
| 2. 자원개발 투자·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3.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·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4. 단기차입금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5.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6. 채무면제 이익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7. 증여·수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8. 회사의 합병, 영업양수·도, 분할·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 | 사유발생일_    | 사유발생         |
| 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·신청되거나 그       | <u>익일</u> | 즉시           |
| 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9. 금전 또는 증권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0.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1.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사항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2. 수시공시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6. 주요사항 보고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   | 총괄부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071 71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게기원      | 전달기한 |
| 1. 부도, <u>은행거래정지</u> 또는 금지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2.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3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4. 해산사유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5. 증자 또는 감자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6.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합병 등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7. 중요한 영업·자산의 양수·양도                   | 사유발생일_    | 사유발생 |
| 8.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포함) 결정 | <u>당일</u> | 즉시   |
| 9. 기타경영·재산 등의 중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10.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<u>등</u>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11.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12. 해외증권시장의 상장, 상장폐지, 매매정지 등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
## 7. 지분변동 보고

| 공시 의무사항  | 공시기한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|--------------|
| <ol> <li>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</li> <li>발행주식의 5% 이상보유 시</li> <li>발행주식의 5% 이상 보유한 경우로</li> <li>1% 이상 증감 시</li> <li>주식의 공개매수 신고</li> <li>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</li> <li>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</li> </ol> | 5일이내<br>5일이내<br>공개매수 공고일<br>피권유자에게 위임장을 송부하기 <u>5일</u> 전<br>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<br>이내,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날로부<br>터 5일까지 | 사유발생<br>즉시   |

## 8. 대규모기업집단 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가.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(정기종시)<br>- 연간공시<br>- 분기별공시  | 5.31일한<br>반기 종료 후 6 | 50일 이내       |
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       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 나. 대규모내부거래 공시(수시공시)<br>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다음의<br>행위로서,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<br>의 100분위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<br>-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<br>-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<br>-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| 이사회의결 후<br>1일 이내    | 이사회<br>의결즉시  |

별표 1

# 기업공시사항

## 1. 정기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. 사업보고서 :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       | -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|
| 2. 반기보고서 :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| -반기 경과 후 45일 내   |
| 3. 분기보고서 :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    | -분기 경과 후 45일 내   |
| 영업실적 등 공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## 2. 주요경영사항(수시공시)

| 공시 의무 사항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「영업 및 생산활동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 가. 매출액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(영업의 인가·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·반납 등 포함) 나. 매출액의 5%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* 다. 매출액의 5% 이상의 단일판매계약·공급계약 체결·해지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라. 매출액의 5%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또는 파기 등 결정 시마. 매출액의 5%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또는 파기 등 결정 시마. 매출액의 5%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 중단, 폐업 또는 재개된 때 2. 「재무구조 변경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기가. 중권에 관한 사항 (1) 증자 또는 갑자 결정 시 (2) 주식의 소각 결정 시 (3) 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·해지포함)결정 시 (4) 주식분할 또는 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) 결정 시 (5)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시 (6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, 증권예탁증권의 발행결정 시 * (7) 해외증권시장에 관한 사항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가) 해외증권시장에 관한 사항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공시] (가)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결정 및 상장 시 (나)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외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·수시로 신고·공시한 때 (다)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 결정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시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 즉시      |

| 공시 의무 사항  (8)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시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(특정금 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지분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 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시 | 기한 전달기한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
| (9) 어음의 위·변조사실 확인 나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결정 시 (2) 자산총액의 5%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(특정금 전신탁 등 포함) 결정 시 (3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(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) 또는 출자지분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  |                  |
|  | 발생일 사유발생<br>일 즉시 |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        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공시 의무 사항  마. 결산에 관한 사항 (1)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.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거래소 에 신고 (가) 감사의견 부적정, 의견거절,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(나)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50% 이상 잠식 (다)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(2)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 절인 때 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 (3) 매출액,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30%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 시. 이 경우 결산주주총 회의 소집을 통지 · 공고하기 이전까지 이를 <u>거래소에 신고하여</u> 야 하며, 매출액·영업손익·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·부채·자본총 계 현황을 함께 신고  (4) 주식배당 결정 <u>시 [사업연도말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]</u> (5) 현금·현물배당(분기배당, 중간배당 포함) 결정, 중간배당 및 분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(기준일) 결정 시 (6)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사항 (가)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(통보)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 시 (나) 검찰에 기소되거나 그 결과 확인 시 (다) 임원이 증선위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 시 3.「기업경영활동」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시 가.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*(1) 최대주주 변경 확인 시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<u>거래소에</u> 신고] *(2) 사외이사 및 감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<u>퇴임하거나, 사외이</u> 사를 선임·해임하는 경우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<u>거래소에</u> 신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<br>즉시   |
| 고] (3)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자회사 또는 주요종속회사 편입 또는 탈퇴 시.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요종속회사를 편입하여 지배회사가 되는 경우 그 주요종속회사 포함 (4)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결정 시 (5) 영업양도양수·임대, 경영위임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(물적 분할합병 포함) 등에 관한 결정 시 (6)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시 나. 존립에 관한 사항 (1) 부도,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(2)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관련사항으로 회생절차 개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시·종결 폐지 및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 (3) 해산사유 발생 (4) 거래은행 또는 <u>금융채권자가</u>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개시・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, 법인 이 동 관리의 신청·취하를 한 때  * (5)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[사유발생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] 〈삭 제〉  다.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·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·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 (1)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,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 (2)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% 이상인 소송 등  (3) 임원의 선임·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하가 신청, 임원의 선임·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·취소의 소,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 (4)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에 따른 소송라.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 시 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영업・생산활동,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시 | 사유발생일<br>당일 | 사유발생 즉시      |

- 주) 1. 매출액, 자기자본, 자산총액, 영업손익, 당기순손익 등은 **최근사업연도말** 기준
  - 2. \*표시는 사유발생일 당일 공시기한에도 불구하고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가능

### 3. 공정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   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<ol> <li>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</li> <li>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</li> <li>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, 영업손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</li> <li>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</li> </ol> | 정보<br>제공 전 | 정보제공<br>결정<br>즉시 |

## 4. 조회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| 공시기한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풍문 및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<br>2. 중요한 정보(수시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정보)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<br>시 | 공시요구<br>시한 | 공시요구<br>즉시   |

## 5. 자율공시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| 총괄부서 |
|--|--------|------|
|  | 0/1/11 | 전달기한 |
| 1. 기술도입·이전·제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2. 자원개발 투자·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3.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·도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4. 단기차입금 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5.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6. 채무면제 이익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7. 증여·수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8. 회사의 합병, 영업양수·도, 분할·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 | 사유발생일  | 사유발생 |
| 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·신청되거나 그       | 다음 날   | 즉시   |
| 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9. 금전 또는 증권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10.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| 11.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   |        |      |
| 사항   |        |      |
| 12. 수시공시 중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알릴      |        |      |
|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

## 6. 주요사항 보고

| 공시 의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기한     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부도,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 또는 금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66/16        |
| 2.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3.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4. 해산사유 발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5. 증자 또는 감자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6. <u>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등</u>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7. 중요한 영업·자산의 양수·양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8.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포함) 결정    | 사유발생일_      | 사유발생         |
| 9. 기타경영·재산 등의 중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| <u>다음 날</u> | 즉시           |
| 10.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개시 또는 공동관리절차 중단 등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1.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2. 해외증권시장의 상장, 상장폐지, 매매정지 등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3.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14.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그 지분증권 등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등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7. 지분변동 보고

| 공시 의무사항  | 공시기한   | 총괄부서<br>전달기한 |
|--|--|--------------|
| 1.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- 발행주식의 5% 이상보유 시 - 발행주식의 5% 이상 보유한 경우로 1% 이상 증감 시 2. 주식의 공개매수 신고 3.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 4.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| 5일이내<br>5일이내<br>공개매수 공고일<br>피권유자에게 위임장을 송부하기 <u>2일</u> 전<br>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<br>이내,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날로부<br>터 5일까지 | 사유발생<br>즉시   |

## <u><삭 제></u>